

유류오염사고의 구상채권에 대한 선주책임제한제도 고찰

김형만 · 임택수 · 김한규* · 임형준 · 강병용

해양경찰청

핵심용어 : 유류오염사고, 선주책임제한, 구상채권

1. 연구배경

유류오염사고시 방제책임에 대한 유조선과 일반선박의 선주책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책임제한제도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유류오염사고시 선주책임제한제도 현황

선박으로부터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상법」 제 773조(유한책임의 배제)제4호에 의해 선주는 무해조치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 하지만 유조선으로부터 발생한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책임에 관하여는 「유류오염손해배상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동법 유조선 선주의 책임제한(제7조)규정과 유조선의 책임한도액(제8조) 규정에 의해 유출사고로 인한 방제비용을 포함한 유류오염손해는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시에는 책임제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책임협약, 국제기금협약 및 추가기금협약을 마련하고 순차적·추가적으로 배보상하기 때문에 일반선박의 사고와 같은 책임제한한도로 인한 청구제한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일반선박의 경우, 선박연료유협약을 「유배법」에서 수용하고 여러차례 법개정을 통해서 「상법」 제769조(선주의 유한책임), 제770조(책임의 한도액), 제773조(유한책임의 배제) 제4호 등을 인용·규정하면서 유류오염사고시 발생된 무해조치(방제조치) 비용을 제외한 유류오염손해배상은 제한된다.

현행법 기준으로 볼때 무해조치 비용중 방제조치비용은 유조선의 경우 유한책임, 일반선박의 경우 무한책임을 가지며 침몰선과 같은 난파물제거채권에 대해서는 유조선과 일반선박 선주는 무한책임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 구상채권 책임제한의 문제점

구상채권은 방제조치를 이행한 제3자가 오염원인자원칙에 따라 오염자에게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구상채권과 선주 책임제한 채권과의 관계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례(2000.8.22. 선고 99다 9646)는 방제의무를 부담하는 선박소유자의 자체적인 방제조치 외에 제3자(정부기관 및 피해자)의 방제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상법」 제773조 제4호에 규정된 이른바 비제한채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법」 제769조제1호 혹은 3호나 제4호에 규정된 제한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일반선박에서 유출된 유류를 선주가 방제업체 등과 계약하여 직접 조치하여 방제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제한채권이라는 의미이고 제3자가 직접 조치하거나 제3자가 동원한 업체의 방제비용은 선주에게 청구가능한 ‘구상채권’이므로 책임이 제한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러한 판례는 구상채권과 방제비용에 대해 선주 책임제한을 배제토록한 상법 773조제4호 규정은 서로 상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선주는 방제책임을 해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통상 사고선 선주가 방제조치를 이행하는 시간이 지연될수록 국가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가가 방제비용을 구상할 경우,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선주의 초동조치 지연으로 이어져 사고규모와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

4. 개선방안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원인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사회적인 추세로 볼 때 해상사고로 인한 오염된 환경의 신속한 회복, 항로의 안전한 항해안전 확보 등을 위해 정부기관의 조치비용에 대한 ‘구상채권’도 비제한채권으로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라 할 수 있다.

향후 방제조치 불이행등 정부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로 성실·신속한 긴급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의 정비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 First Author : khg50@korea.kr